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91-0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에 대한 지침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워킹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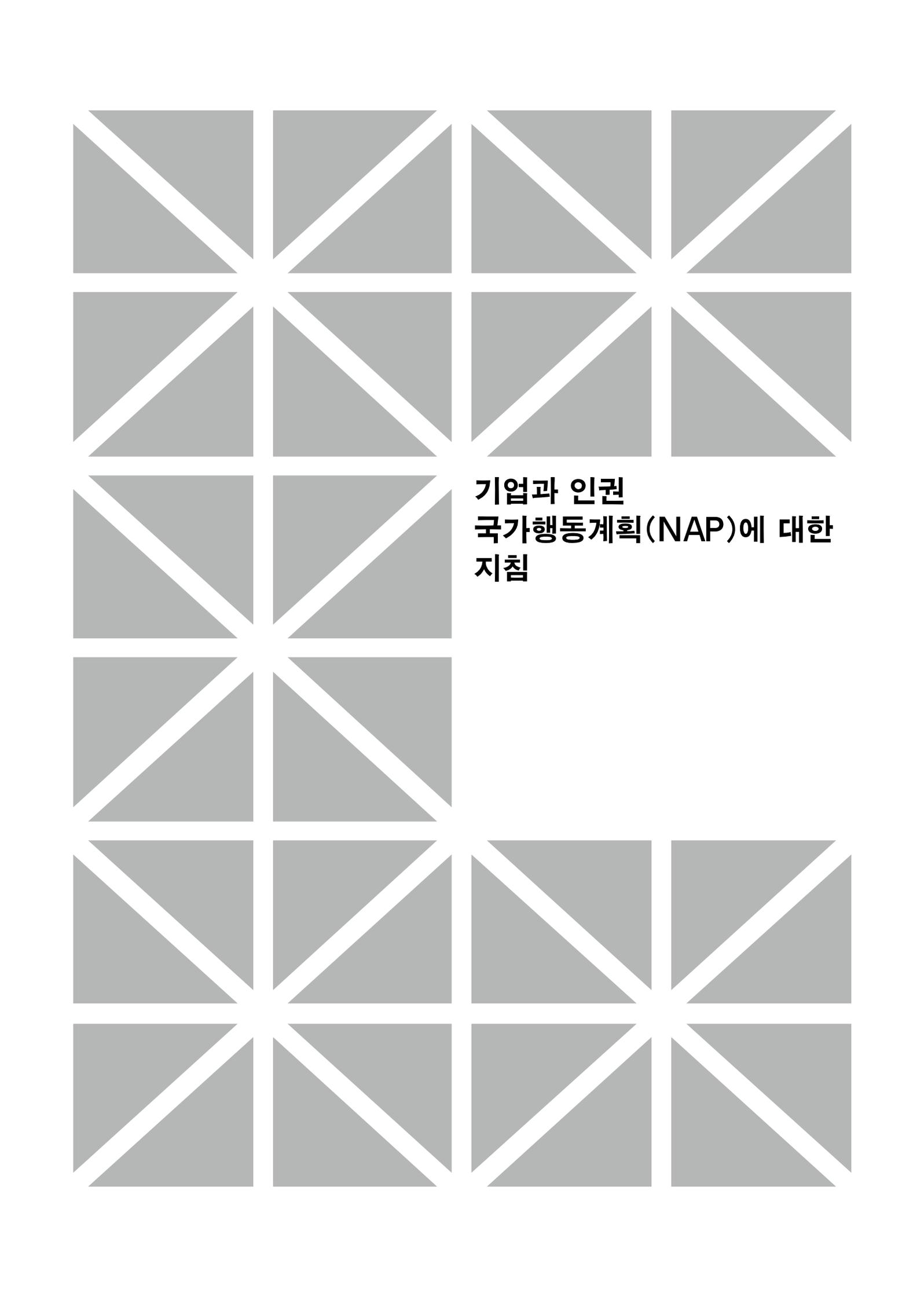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에 대한 지침

Guidance on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워킹그룹
버전 1.0, 2014년 12월 1일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Version 1.0 / December 2014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에 대한
지침**

이 문서의 번역은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한 연구(2015)〉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번역수행기관: 한국인권재단)

개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워킹그룹(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WG), 이하 'UN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이 발간한 본 지침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National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NAP')의 개발, 실행 및 개정 사항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이 문서는 NAP 과정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참고서로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NAP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부재하다는 인식 위에 기초한다.

정의와 핵심 기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NAP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UNGPs), 이하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진화하는 국가의 보호정책전략"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효과적인 NAP를 위해 네 개의 필수 기준을 고려한다.

첫째, NAP는 UN 이행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행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NAP는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국제인권법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케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NAP는 더 나아가 실사(due diligence)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NAP는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인권의 핵심 원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NAP는 맥락에 따라 구체적이고, 국가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인 기업 인권영향을 다뤄야 한다. 정부는 보다. 집약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정의내림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셋째, NAP는 포괄적이고 투명한 과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관심을 보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NAP의 개발과 개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관점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는 모든 과정의 단계에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넷째, NAP 프로세스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정 되어야 하며 변화된 맥락에 대응하고, 진전사항이 쌓일 수 있도록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NAP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정부가 5개 국면, 15 단계로 구성된 과정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국면 1~3은 초기 NAP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국면 4~5는 성공적인 NAP를 위해 실행, 모니터링,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순환구조를 포함한다.

국면 1: 시작

1.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을 취하고 공표한다.
2. 부서 간 협력에 대한 형태와 리더십을 구축한다.
3. 비정부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형태를 구축한다.
4. 활동계획을 개발 및 발표하고, 적절히 자원을 배분한다.

국면 2: 평가와 협의

5.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
6. 이행원칙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국가와 기업의 격차를 규명한다.
7.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우선 영역을 확인한다.

국면 3: NAP 초안 작성

8. NAP 초안을 작성한다.
9.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초안에 대해 협의한다.
10. NAP 초안을 완성하고, 출범한다.

국면 4. 실행

11. 행동을 실행하고, 부서 간 협력을 지속한다.
12.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면 5. 개정

13. 기존 NAP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격차를 규명한다.

- 14.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우선 영역을 확인한다.
- 15. 개정 NAP의 초안을 작성하고, 협의 및 완성하여 출간한다.

NAP 구성에 대한 지침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정부가 다음 4 개의 영역으로 NAP를 구성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소개 부분에서, 정부는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으로부터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인권 실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된 곳에서의 구제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여 기업이 이행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서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에 대한 실행의 중요성을 NAP에 개괄적으로 서술된 정책과 활동에 명시해야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몇 가지 맥락을 짚어야 한다. 정부는 NAP에서 UN의 이행원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포함하고, 다른 관련된 정부정책 전략과 NAP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밝히며, 국내의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핵심 도전과제에 대해 개요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부분으로, 정부는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우선과제를 강조하고, 국가를 겨냥하여 각각의 이행원칙에 대한 현재와 향후 계획된 활동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이행원칙 1-10, 25-18, 31). 계획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정부는 관련기관의 분명한 책임, 기간 및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 실행 양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록 II 참조)

네 번째 부분으로, 정부는 모니터링과 개정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는 다중 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차기 NAP 개정에 대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부록 I 참조)

정부 대응에서의 핵심 원칙

세 번째 부분으로, 제안된 NAP 구조에서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개요로 서술

하는 것은 핵심 부분이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기업이 그들의 노력을 확인할 때, 네 개의 핵심 원칙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첫째로, 전반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NAP에 있어서의 모든 노력은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예방, 중재, 구제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곳뿐만 아니라 규모, 범위, 조정 불가능한 특성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로, 이행원칙은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 방법을 규명해야 한다. 정부는 그들의 전략을 정의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정의를 내릴 때 제 1, 3축의 방향에 대한 이행원칙을 따를 수 있다. 국가의 조치를 보다. 세분화 할 때, 정부는 또한 제 2, 3축에서의 기업의 존중 책임을 다루는 이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정부활동에서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줄기으로써 인권의 실사(Due diligence) 개념을 증진시켜야 한다. 본 지침의 부록 III에서는 각각의 이행원칙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잠정적인 이슈 목록을 제공한다.

셋째, 정부는 의무와 자발주의, 국제와 국내의 정책에 있어서 "현명한 융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현명한 융합'을 확인하는 일은 정부가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보호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노력들의 조화를 확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는 여성 또는 남성, 여아 또는 남아에 서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NAP에서 정의된 조치가 이러한 영향에 있어 효과적인 예방, 중재 및 구제를 감안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정부대표들이 NAP를 계획하고, 초안을 작성할 때 본 지침의 권고를 따를 것을 장려한다. 비정부의 이해관계자들도 정부가 본 지침에 따라 NAP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본 문서에서의 권고안과는 다른 부정의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007 **개요**

010 **1. 소개**

배경
기업과 인권 NAP의 가치
본 지침의 목적
지침의 구조

012 **2. NAP의 정의와 핵심 기준**

NAP의 토대로서의 UN 이행원칙
국가 맥락에서 직면하게 된 특정 어려움에 대한 대응
포괄성과 투명성
정기적인 검토와 개정의 지속적인 과정

014 **3. NAP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

국면 1: 착수
국면 2: 평가와 협의
국면 3: 초기 NAP의 초안 작성
국면 4: 실행
국면 5: 개정

020 **4. NAP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4.1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
4.2 정부대응의 기본원칙

022 **5. 결론**

023 부록 I: NAP 목차 모델
024 부록 II: NAP 구조 모델 SECTION III. C (행동 포인트 및 이행 양상의 모음)
025 부록 III: NAP에 포함되도록 고려되는 잠정적인 이슈 목록

1. 소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원칙¹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실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권 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구성되었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NAP를 UN 이행원칙의 실행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한다.

이 문서는 NAP에 대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의 지침으로 본 권고안들은 NAP의 절차와 내용적인 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된다.

배경

2011년 6월, UN 인권이사회는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UN 이행원칙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다루는 데에 강력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행원칙은 UN 사무총장이 임명한 존 러기 특별대표에 의해 6년 동안 국가, 기업 및 시민사회 간의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이행원칙이 제공하고 있는 이 권위 있는 프레임워크는 부정적인 기업의 인권영향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 모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행원칙은 다음의 3가지 핵심 축(Pillars)에 기초한다.

- 제 1축(Pillar)은 기업에 의한 부정적인 인권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 또한 각각의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통해 일련의 운영 원칙의 개요를 구성한다.
- 제 2축은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책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

사(due diligence)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 제 3축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이행원칙은 국가, 민간부문, 시민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본 원칙은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관하여 예방, 중재, 구제의 노력에 대한 핵심 기준점이 되었다. 이행원칙이 인권 이사회에서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자마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행원칙의 실행 수단으로서 NAP를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² 각 대륙의 많은 국가들은 점차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점차 착수하기 시작했다.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몇몇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NAP 초안을 발표하였다.³

기업과 인권 NAP의 가치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NAP가 개발 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범위에 대하여 정부 내 조정과 일관성
- 국가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정책 방안 및 행동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포괄적인 과정
- 국내 및 국제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과 실행에 대한 평가
- 진행 중인 이해관계자 대화를 위한 플랫폼
- 국제 협력, 조정 및 모범사례와 교훈에 대한 교류

지침의 목적

이 문서는 어떻게 국가가 성공적인 형태의 NAP를

1. 참조: A/HRC/17/31

2. 인권 이사회 23차 회기 보고서에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NAP를 정교히 만들 것을 고려"하도록 국가에 요청하였다. (A/HRC/23/32, p. 21). 더욱이 2014년 2월 17차 회기에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NAP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로드맵의 윤곽을 그렸다. (A/HRC/WG.12/7/1).

3. NAP에 대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의 정보 저장소는 아래 주소와 같다. <http://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NationalActionPlans.aspx>

위해 개발, 내용 및 실행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의 관점을 명확히 한다. 본 지침의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1)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예방 및 중재하며,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NAP 과정을 증진한다.
- 2) 더 많은 국가, 시민사회 행위자 및 기업들이 NAP과 같은 과정을 개발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본 지침은 개발 중인 NAP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은 아니며, NAP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NAP가 개발되는 국가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절차적, 내용적 측면들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NAP 과정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활용될 수 실질적인 문서이다. 본 서는 NAP 프로세스의 개발과 체계화를 이끌 수 있는 정부 기구들을 안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방침을 가늠할 수 있는 업무의 실제적 기준을 제시한다.

UN 이행원칙하의 국가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은

NAP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본 지침과 NAP가 UN 이행원칙의 조항을 약화시키거나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한 UN 이행원칙의 실행을 연기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본 지침은 UN 여러 국가에서 NAP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의 권한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얻은 교훈을 종합한 것이다. 여러 대륙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이 개최한 컨설팅에 의해서도 보장되었다.⁴ 본 지침은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에 의해 정기적으로 개정될 예정인 '살아 있는 문서'이다.

지침의 구조

본 지침은 다음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제 2장에서 NAP의 정의를 내리고, NAP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이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한 4가지 범주를 마련한다. 제 3장은 NAP 개발 과정에서의 지침을 제공한다. NAP 과정은 5개의 국면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국면에서 지침은 권고할 만한 실질적인 단계들을 개요로 설명한다. 제 4장은 NAP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권고안들을 제공한다. 부록 I에는 NAP 내용에 대하여 모델로표를 만든 것이 포함되었다. 부록 II는 행동방침과 실행형식의 모아내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부록 III은 NAP를 체계적으로 형성할 때 고려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잠정적인 목록을 제공한다.

4. 이들 컨설팅은 2014년 2월과 5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공개 컨설팅 및 전문가 워크숍 2) 국가 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실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온라인 컨설팅 3) 국가에 송부될 질문지 4) the Centre for Applied Legal Studies at the Witwatersrand School of Law (CALS)와 the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chool of Law(SMU)가 학계와 독립적인 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한 2차 연구 및 인터뷰이다. 더욱이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NAP 프로젝트의 부분으로서 the International Corporate Accountability Roundtable (ICAR)와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HR)가 조직한 컨설팅에 참여하여 시사점들을 도출해냈다.

2. NAP의 정의와 핵심 기준

NAP는 특정 정책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 및 구체적인 활동을 개괄적으로 서술하는 국가 정책전략이다.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NAP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국가가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서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개발되고 확산되는 정책 전략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경제발전, 인권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기타 국가 전략들에 NAP를 포함시키는 것도 국가적인 맥락에서 특히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NAP는 관련된 모든 정부 전략과 합치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효과적인 NAP를 위해서 필수적인 4가지 기준을 고려한다. NAP는 1) UN 이행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2) 국가 맥락에서의 특수적인 도전과제에 응답해야 하며 3) 포괄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하며 4)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NAP의 토대로서의 UN 이행원칙

NAP는 UN 이행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행원칙에 따라, NAP는 국제 인권기준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부정적인 기업 인권 영향을 예방, 중재 및 구제 할 국가의 의무와 기업의 책임의 보완성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다.

공공정책 전략으로서의 NAP는 국가가 인권 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한다. UN 이행원칙 하에서의 국가의 보호 의무를 실행하고자 할 때, 국가는 제 2축, 3축 하에서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방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규명한다. UN 이행원칙은 기업이 다양한 정부정책 및 규제 기준에 의한 국내 규범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UN 이행원칙에 따라, NAP는 반드시 비차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핵심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성별(gender)에 근거하여 차별화 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취약하고 소외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개인과 집단이 직면한 어려움을 확인하고 다루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뜻이다.

국가는 UN 이행원칙을 핵심 참고사항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 정부 기구 간 UN 이행원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제 2장 단계 1 참조)
- UN 이행원칙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수행에서 발생된 격차를 확인한다. (제 2장, 단계 6, 13 참조)
- 보호 격차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절한 조차를 규명하고, 결정하고자 할 때 UN 이행원칙을 이행 규범으로써 활용한다. (제 4장의 4.2 및 부록 III 참조)

국가 맥락에서 직면하게 된 특정 어려움에 대한 대응

모든 NAP는 UN 이행원칙과 국제인권규범과 일관되게 공통의 기반을 공유하지만, 모든 것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각각의 NAP는 관련된 국가적 맥락에서 중요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한 국가는 기업들의 모국이 되는 국가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질문과 정책들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느 한 구체적인 부문이 한 국가의 경제에 특히 중요하다면, 이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강조로 이어질 수 있다.

NAP과 그 프로세스는 개발 및 개정을 통해 각각의 국가역량과 문화적·역사적인 맥락에 적응해야 한다.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대한 예방과 구제

에 대하여 가장 가능한 영향을 가져다줄 집약적이고 현실적인 행동들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 맥락에 따라 어떻게 우선 행동 방침을 규명해야하는가?

- 국가에 정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가 내 관할 영토와 해외에서 발생시킨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규명하고 도표화 하라 (제 3장, 단계 5와 13을 참조)
- UN 이행원칙의 국가와 기업의 실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개정하라 (제 3장, 단계 6, 13을 참조)

포괄성과 투명성

NAP의 개발, 모니터링 및 개정을 포함한 NAP 프로세스는 반드시 포괄적이고 투명적해야 하며,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권리적 접근으로, NAP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정도는 다른 것들 사이에서 NAP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도전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그들은 NAP에 서술된 노력들에 대해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정부 및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을 포용을 통해 NAP 프로세스는 국가의 보호 의무, UN 이행원칙의 실행을 보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교류와 조정을 위한 핵심적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NAP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로 초대된 이해관계자들은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노동조합, 기업 및 협회를 포함하며, 아동, 여성, 원주민, 소수민족 및 장애인과 같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특히 취약한 집단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가능한 곳 어디에서든지 기업의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이나, 그들의 관점을 법률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행위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는 포용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 가능한 정부 내 여러 관련 부처들을 참여시키고, 정기적인 교류를 위한 형태를 만들 것 (제 3장, 단계 1, 4 참조)
- NAP 개발, 모니터링 및 개정 과정을 통하여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요구를 협의하고 고려한다. (제 3장, 단계 3, 4, 5, 6, 7, 9, 12, 13, 14, 15 참조).
- NAP 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한 시간계획의 윤곽을 잡고 개정한다. (제 3장, 단계 4 참조)
- 정기적으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평가 및 협의에 대한 정보와 결과를 공유한다. (제 3장, 단계 4, 5, 6, 13 참조)

정기적인 검토와 개정의 지속적인 과정

NAP 프로세스는 한 번의 이벤트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초기 NAP를 개발하면서, 국가는 특정 영역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초기 NAP는 국가에서 발생된 모든 기업과 인권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NAP의 정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를 통해 누적 효과와 진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NAP의 개정은 정치적 우선순위와 국제적인 규제 환경 실제적이고 잠재적일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국가는 지속성을 보장해야 하는가 ?

-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제약을 두지 않는 열린 과정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3장, 단계 1 참조)
- 기존의 NAP가 개정될 때는 NAP 내에서 명료히 수행한다. (제 4장의 4.1 및 부록 I 참조)
- NAP에서 정의한 행동의 실행에 대해 분명한 타임라인을 제공한다. (제 4장의 4.1 및 부록 II 참조)

3. NAP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NAP가 그 내용만큼 중요하게 개발, 실행 및 개정을 통한 과정으로 고려한다. 이 장은 NAP 프로세스의 조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5개 국면으로 1) 착수 2) 평가 및 협의 3) 초기 NAP의 초안 작성 4) 실행 5) 개정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3개의 국면은 초기 NAP의 개발을 설명하고, 반면 4, 5 국면은 성공적인 NAP의 지속적인 실행 및 개정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각각의 국면을 위해, 정부에 의해 많은 권고 단계 및 선정된 실제 사례들의 윤곽이 잡힌다. 그 단계들은 권고안들과 모범 사례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15 단계들은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이 국가들로 하여금 다르도록 권고한 모델의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국가 맥락의 특수성에 기초한 권고 과정으로부터 잠재적인 편차에 동의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결정할 일이다.

국면 1: 착수

첫 번째 국면에서는 NAP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초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별 국가들은 NAP 개발을 위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적은 수의 정부 및 비정부 기구가 NAP 개발을 위한 초기의 지원을 주도하는 것이 유용하다.

첫 번째 국면의 말미에서, 초기 NAP의 개발에 대한 기초 양상은 명확해야 하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 관련 정부 기구들로부터의 수용(BUY-IN)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 임무를 앞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공통의 이해가 될 수 있다. 관련된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그들로부터 기대하는 바와 정부가 그들로부터 기대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권고 단계:

1) NAP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을 추구한다.

NAP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에서, 열려있는 NAP 프로세스로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 NAP 프로세스를 착수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들은 이 프로세스에서 포함되어야 할 관련 정부 부처를 확인해야 한다.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 개발 또는 사회문제의 이슈를 담당하는 관련기구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일단 확인되면,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 관련된 정부 부처와 기구의 대표들 사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 하에서 국가의 의무의 실행에 따라 발생된 격차와 기업과 인권의 도전과제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알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또는 국가 인권기구의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NAP 프로세스를 착수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정부기구들의 편에서, 고려해야 할 활동은 정부의 내부 토론 또는 워크숍, 관련 연구의 지원, 또는 NAP 개발을 포함하여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한 대중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NAP 프로세스를 착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통지해 주기를 희망한다.⁵

2) 부서 간 협력을 위한 구성방식을 고안하고, 리더십을 지명한다.

일단 정부(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부서)가 공식적으로 NAP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로 결정 하면, 관련 정부 기구들 사이에서 조정 및 정기적인 소통을 위한 방식을 구성해야 한다. 하나의 방법은 NAP 개발에 대한 업무가 소재한 부서에 공식적인 부처 간 워킹

5. 관련 정보는 wg-business@ohchr.org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결의안 26/22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들로 하여금 NAP의 실행 노력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장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워킹그룹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 또는 몇 개의 전담 정부 기구들은 이 프로세스를 이끌도록 지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지도하는 기구들의 권한은 초안 과정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 그리고 비정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을 조정하는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

3) 비정부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를 위한 구성방식을 세운다.

관련된 비정부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는 NAP의 효과제고와 정당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유엔 이행원칙의 국내 이행에 대한 교류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비정부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를 위한 형식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데에 관심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발굴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에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에서 아동, 여성, 원주민, 소수민족 및 장애인과 같이 특히 더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의 대표들을 포함하며,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노동조합, 기업 및 협회를 포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기업의 인권 침해 받은 개인 또는 법률적으로 그들의 관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들이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행동계획을 개발 및 공표하고, 적절한 자원을 배분한다.

첫 번째 국면에서의 최종 단계로써, 정부 기구들은 행동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한 국면 2와 3의 단계들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 관련 정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면, 이 계획은 관련된 비정부 기구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보급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프로세스가 전개되면서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은 계획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더욱이, 정부들은 NAP 개발과정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실히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요구되

는 자원의 양과 종류는 국가의 맥락과 각 과정들이 계획되는 방식에 달려있을 것이다.

국면 1에 대한 몇몇 실제 사례:

필리핀, 가나 및 모로코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인권기구는 NAP 프로세스를 착수시키기 위해 연구 수행, 이해관계자 대화 조직, 기타 인지제고 및 역량 형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NAP 프로세스 착수에 우호적인 **슬로베니아와 독일** 정부기구에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회의를 주최하였다.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NAP를 개발하도록 요청하였다. 국가 인권행동계획을 갖고 있는 **탄자니아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NAP도 개발할 것을 발표했다. NAP 개발이 진전을 이룬 단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위한 형태 만들어 진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정부는 다중 이해관계자 그룹들과 밀접하게 상시적으로 협력중이다. **스페인** 외교부는 일찍이 이 과정에서 NAP 개발을 위한 활동계획을 발간하였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국면 2: 평가와 협의

국면 2 동안에는 NAP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국가 맥락에서 유엔 이행원칙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비정부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포함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목적은, 국면 2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기업의 인권영향 및 정부와 기업의 반응에서 발생된 격차가 규명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정부이해관계자들은 NAP가 포함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정부 행위자들은 UN 이행 원칙의 실행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하고 공통된 이해를 지녀야 한다.

권고 단계:

5)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근거에 기초한 우선순위 설정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영토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더욱이, 미래의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평가를 수행하는 시점에서의 영향 또한 다룬다.

이와 같은 도표화 작업은,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또는 국가인권기구와 다른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를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의견개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역외적으로 발생된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해서라면, 해당 지역의 국가인권기구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평가의 결과를 공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국가와 기업이 UN 기업과 인권 원칙을 실행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격차를 규명한다.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전과제를 유념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실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격차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제 1축과 3축(이행원칙 1-10, 25-28 그리고 31)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루는 각각의 이행원칙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 규제 및 정책을 요약 서술하고, 각각의 격차를 규명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은 제 2, 3축(이행원칙 11-24과 28-31)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영토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인권 실사 과정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조직 차원에서 고충처리 제도를 통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가의 한 부분으로써,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도록 반드시 초청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NAP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생산해 내기 위한 평가를 위하여,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정부가 국가인권기구 또는 외부 독립기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공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CAR와 DIHR에서 개발한 기초선 평가 템플릿

NAP 툴킷의 하나로서, The International Corporate Accountability Roundtable (ICAR)와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IHR)는 공동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대한 국가의 실행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초선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세분화된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NAP 수립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국가의 이행원칙 실행에 발생하는 격차를 규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본 지침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본 지침은 다음 사이트 주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accountabilityroundtable.org/analysis/napsreport/>.

7)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격차를 다루고 우선순위 영역을 규명하기 위한 행동들을 협의한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국가의 보호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정적 영향과 격차를 규명한 이후, 이해관계자들과 NAP에 포함되어야 할 우선과제와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을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같은 협의 과정은 모든 비정부기구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워크숍, 대상 인터뷰, 또는 서면 보고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들 협의의 결과에 기초하면서, NAP 프로세스에 관련된 정부기구의 행위자들은 초기 NAP에서 다뤄져야 할 우선 영역을 공동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우선영역을 선택함에 있어 두 개의 기준에 기초할 것을 권고한다. 하나의 기준은 규모, 범위 및 회복 불가능한 특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 영향의 심각성에 관한 것이다.⁶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정부의 영향력이다.

실행 국면 2에 대한 몇 개의 사례:

말레이시아 정부는, NAP에 대한 정의의 근거를 위해 정책 연구에 참여해 왔다.

모잠비크에서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실행에 관한 기초선 연구를 개발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의 UN 기업과 인권 원칙의 실행에서 발생한 격차를 규명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국가인권기구 또는 독립연구기관에 권한을 부여한다.

콜롬비아 NAP(NAP)에서의 기업과 인권 첩터는 전국적으로 연석 개최된 워크숍에서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하였다.

NAP가 개발된 **모든 국가**에서는 초기의 단계에 비정기구구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노력이 있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정부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NAP에 대한 기대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수행 하였다.

국면 3: 초기 NAP의 초안 작성

국면 3은 초기 NAP의 초안 작성으로 구성된다. 이 초안은 발간되기 이전에 협의를 거쳐 수정되어야 한다. 이 국면에서의 활동은 제 2국면에서의 평가와 협의의 결과에 기초하여 이뤄진다.

제 3국면 이후 초기 NAP가 발간될 것이다. 이 문서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2국면에서 발견된 우선 영역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돕으로써 이전에 규명된 거버넌스의 격차를 다루는 데에 있다. 초안은 본 안내서 4장에서 서술되어 있는 NAP 내용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부록 3에서 강조된 잠재

적인 조치들에 대한 잠정적인 목록에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권고단계:

8) 초기 NAP의 초안 작성한다.

우선순위 과제들을 규명하고, 그 맥락을 평가한 후에 초기 NAP의 초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각각의 행동을 실행하기로 한 정부부처들의 활발한 참여는 NAP의 효과성을 강화할 것이다. 선도적인 정부 부처들의 역할도 이 국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관련된 기구들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상반되는 이익을 중재하고 정부정책과 규제를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에 힘쓸 것이다.

정부는 본 안내서 제 4장의 4.1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을 따를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정부의 선언, 배경 및 맥락에 대한 정보, 현재 그리고 계획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설명을 다룰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인권의 도전과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NAP는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집중되며, 성취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서술해야만 한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제 4장의 4.2에서 서술하고 있는 NAP의 실질내용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과 관련된 권고안들이 유용하다고 고려할 것이다. 또한 부록 3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각각의 이행 원칙들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들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목록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이다.

9)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초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일단 초기 NAP의 초안이 준비되었다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초안 문서에 대해 서면 검토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 인권 분야에서의 모범 관행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비정부 기구의 이해관계자들과 NAP 초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NAP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후속 실행국면에서 비정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14의 해설을 참조한다. 보다 더 깊이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해설 안내서, UN 인권 최고대표사무소(2011), 8쪽' 참조.

10) 초기 NAP를 완성하고 발표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NAP 초안을 검토한 이후에, NAP를 완결시킨다. 정부는 NAP의 발표가, 제 2축과 3축에 대한 기업의 실행에 대한 정부의 기대를 포함하여 국가의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제 3국면 실행에 대한 몇몇의 사례:

핀란드와 스페인 정부는 NAP 초안에 대해서로 협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NAP의 토대를 요약 서술한 문서를 발간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검토를 받은 바 있다.

영국의 NAP는 기업과 인권 의제에 대한 고위급 장관들의 지지를 서술하면서, 두개의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공표한 바 있다.

국면 4: 실행

국면 4는 NAP 실행과 모니터링에 있어서의 제도적 설립과 과정에 대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의 권고안들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이 과정은 NAP에서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목적은 국면 4 이후에, 각각의 NAP에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조치를 실행할 것에 관한 점이다. 비정부 기구의 이해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의 검토와 권고안들이 일련의 토대 위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고 단계:

11) NAP에서 발견된 행동들을 실행하고,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한다.

NAP는 단지 정부의 신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NAP의 실행은 NAP에서 서술된 각각의 행동계획들이 보다 분명한 목표와 책임, 그리고 시점을 두고 정의되고 (부록 2 참조), 필요한 자원을 이용 가능할 수 있을 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선도 부처가 이끌고,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실행에 일관성을 제고하고, NAP를 전체로서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정부 행위자들은 지속적인 부처 간 협력을 보장해야 하고, 필요시 2단계 하에서의 부처간 협력의 형태를 개선하면서 검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2) 다중 이해관계자 모니터링 그룹과 모니터링 방식을 구성한다.

지속적으로 다중 이해관계자가 개입하고 NAP 실행을 감독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독립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모니터링 그룹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그룹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3단계에서 발전된 그룹을 기반으로 형성할 것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정부 활동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NAP 실행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을 다중 이해관계자 모니터링 그룹에게 일정하게 보고할 것을 고려해야 하고, 그 권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주무부서가 지정되어 비정부기구의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NAP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와 요청사항 등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국면 실행에 대한 몇몇의 사례:

영국 정부는 NAP 실행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핀란드 NAP가 실행해야 할 조치로 담고 있는 내용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원회에서 연례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스페인 NAP의 초안에는 정기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협의의 과정과 실행 단계에서 국회 산하 위원회에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국면 5: 개정

국면 5는 NAP를 평가하고 개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권고사항들은 초기 NAP 개발에서의 국면 1과 국면 3에서의 지침을 반영한다. NAP에 대한 차기 평가와 개정 날짜도 반드시 NAP에 명시되어야 한다.

5국면 이후에는 개정 NAP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버전의 NAP는 남아있는 거버넌스 격차를 극복하고, 이전의 NAP 실행 기간 동안에 이뤄낸 진전사항들과 국내의 맥락에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권고 단계:

13) 이전 NAP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거버넌스 격차를 규명한다.

NAP의 개정은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 중재,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기존의 NAP의 효과성을 철저히 평가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벤치마크의 일환인(부록 2 참고) 정부의 수행지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 평가는 국가인권기구 또는 기타 전문가들과 같은 독립기구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는 5단계와 6단계에서 수행되는 평가내용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가장 밀접한 도전과제에 대하여 재평가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들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실행하는 정부와 기업의 수행도 포함된다. 관련된 비정부기구의 이해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의 신뢰성은 정부가 국가인권기구 또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한다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전의) 평가뿐만 아니라 (후속) 평

가도 반드시 공적으로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격차를 다루기 위한 행동계획들을 협의하고, 우선 영역을 규명한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평가의 결과와 잔존하는 거버넌스 격차에 대한 재평가의 결과를 충분히 공지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규명된 격차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동계획들에 대하여 그들의 관점과 우선순위를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의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NAP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기구들은 개정 NAP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우선 영역을 규명해야 한다.

15) 개정 NAP의 초안 작업을 하고, 이를 협의, 완성 및 공표한다.

평가와 협의에 기초하면서, 정부 기구들은 개정 NAP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이 작성안은 반드시 비정부 기구들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정된 버전의 NAP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완결 짓고 공표해야 한다. 업데이트 과정의 부분으로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의 권고들은 8, 9, 10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기 NAP 개발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제 5국면 실행에 대한 몇몇의 사례:

영국 정부는 NAP 검토에 대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덴마크 NAP에는 기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NAP'과의 연관선상에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실행과 관련된 우선과제를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4. NAP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전 장이 NAP절차와 관련한 권고를 소개하였다면, 이번 장에서는 NAP 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한다.

첫 번째 부분은 전반적인 구조 및 정부가 NAP에 포함되도록 고려해야 할 차별적인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은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대한 대응을 확인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4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한다.

이 장은 정부가 관련 이행원칙의 각각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조치의 잠정적인 목록을 보여준 부록 III을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1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

NAP는 UN이행원칙에 따라 부정적인 기업 관련 인권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일련의 구체적인 정부의 약속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정부가 그들의 NAP에 아래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부록 I 을 또한 참조한다.)

I. UNGP이행을 위한 서약 성명

정부는, NAP의 도입 부분에서, 부정적인 기업 인권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공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기반한 활동에 있어 UN이행원칙을 권위 있는 문서로서 언급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기업의 인권 존중과 UN 이행원칙의 제 2축, 3축 하의 인권 실사 이행에 대한 기대의 명확성을 포함해야 한다. 도입부분은 국가원수 및 관련 정부 관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II. 배경과 맥락(상황)

제 2장은 NAP의 배경과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제 2장)은 이행원칙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국가 개발계획, CSR 전략 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인권에 관한 NAP와 같은 정부의 현존 정책 전략과 NAP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제 4 또는 132단계 실행에서 기업과 인권의 중요한 도전과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III. 정부대응

제 4장에서는 정부가 현존하는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어떻게 다루고, 이를 위해 정부가 향후에 해야 할 활동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첫째로 7 또는 14단계에서 확인된 우선 순위 영역을 강조하고 기업과 인권의 접근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서술해야 한다. 그 후에 국가에 관한 각 기본원칙에 관한 현재 활동 및 계획된(향후) 활동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 (기본원칙 1-10, 25-28, 30 그리고 31). 현재 활동에 관한 부분은 6 또는 13단계 동안에 실행된 평가 결과 부분을 요약한다.

계획된(향후) 활동은 6단계 또는 13단계에서 확인된 보호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심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는 조치들이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NAP에 명시된 모든 활동계획을 위해, 정부는 1) 구체적인 목적, 2) 실행되어야 할 행동, 3) 관련 기업체의 명확한 책임에 대한 기여 4) 행동 이행을 위한 기간, 그리고 5) 활동의 이행과 영향을 평가할 지표(부록 2장 참고)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IV.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정부는 NAP가행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NAP의 다음 개정(업데이트) 기한을 정해야 한다.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모니터링 집단을 마련해야한다고 권고한다. (12단계를 참조.)

4.2 정부대응의 기본원칙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대한 정부 대응이라는 정의는 NAP의 핵심요소이다. (전반적인 구조를 제안한 제 III장을 참고.)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정부가 이 부분을 개발하고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원칙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1) 구체적인 영향을 다루는 것에 집중하라

NAP는 기업과 인권의 사실적이고 잠재적인 도전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정부의 법적 의무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제한되는 반면에, 국가는 또한 이행원칙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 주재하는 기업에 대한 역외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순위로 다루어지는 영향부분 선택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2) 그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부의 영향력 (7단계를 참조).

2)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행원칙을 이용하라.

정부는 기업에 의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예방, 완화 그리고 구제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한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행원칙에 의존해야 한다.

이행원칙은 부정적인 인권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와 관련하여 (일련의) 광범위하게 수락된 원칙과 이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관한 운영 지침을 서술한다. (이행원칙 1-10, 25-28, 30 그리고 31). 이 원칙들은,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떻게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구제하도록 지지, 장려, 또는 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구체화한다. 그들은 또한 국가소유 또는 통제 받는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할 것과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도움이 되는 환경을 보장할 것에 관하여 구체화한다. 이 지침의 부록 III에서는 각 이행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구체적인 조치의 잠정적인 리스트

를 제공한다.

동시에, 정부는 그들의 조치를 고안할 때, 제 2, 3 원칙에 있어서 기업을 강조한 이행원칙을 언급해야 한다. (이행원칙 10-24 and 28-31). 특히, 인권 실사의 개념은 NAP에 서술된 정부 활동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증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 실사를 이행할 것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지지, 장려, 그리고 요구하도록 할 정부 조치와 관련하여 인권 실사 개념을 증진하고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3) 잘 혼합된 국내외적, 자발적, 강제적 조치를 확인하라.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UN 이행원칙에 따라 NAP에 잘 혼합된 국내외 조치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강제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잘 혼합된 조치(SMART MIX)”는 기업의 인권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악된 조치의 결합은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smart”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4) 특정 젠더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라.

정부는 남녀간, 그리고 소녀 또는 소년 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그러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젠더 분석을 통합하여야 하는데, 성별데이터 수집, 그리고 교정 또는 젠더 기반 영향을 예방, 완화 그리고 허용하는 조치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

5. 결론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이 마련한 이 지침의 목적은 'NAP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NAP 절차와 내용에 대한 권고를 제공함에 있다. 이 문서는 효과적인 NAP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NAP절차에 추가적인 정부가 참여하도록 설득시키는 노력을 돕기 위함이다.

이 지침의 필수 구성요소는 :

- 효과적인 NAP 절차를 위한 4가지 필수 기준을 포함한 NAP 정의 (제 2장);
- NAP 개발, 이행 그리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15단계의 프로세스 모델(제 3장);
-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 대응의 4가지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NAP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을 특징짓는 4개의 일반적인 영역에 관한 정의;
- 주석이 달린 NAP 목차 모델 (부록 I);
- 다양한 활동과 이행 양식의 요약 방안에 관한 제안(부록 II); 그리고

- 각 관련 이행원칙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의 예시 목록(부록 III)

이 모든 요소들과 관련하여, 이 지침은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지침은 NAP의 절차와 실제 모두 국내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점과 다중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해에 기반한다. 동시에,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NAP가 이 지침에 따라 서술된 권고에 따르면 NAP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신한다.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NAP 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이 지침에 따를 것을 장려한다. 정부대표는 NAP 절차와 초안 작성 시에 권고들을 따르도록 고려해야 한다. 비 정부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정부에게 이 지침에 따라 NAP를 개발할 것과 이 문서에 설명된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권고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 및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한다.

부록 I : NAP 목차 모델

이 부록은 NAP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각 영역과 세부영역에 의해 제기된 핵심 요소들을 서술한다.

I. 서약성명 (Statement of commitment)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구제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약속;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기대의 명확화; NAP가 기반으로 해야 할 권위 있는 문서로서의 이행원칙에 대한 언급; 국가의 장 및 관련 정부 공무원(관계자)의 승인

II. 배경과 맥락

이행원칙에 대한 간략한 소개; 국가개발계획, CSR 전략, 또는 좀 더 포괄적인 인권에 관한 NAP과 같은 현존하는 정책적 전략과 NAP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화; 5 또는 13단계에서 파악한 기업과 인권의 핵심 도전과제의 요약.

III. 정부대응

정부가 부정적인 기업의 인권 영향을 대처하고 계획 할지에 관한 명확화

A. 우선 영역 그리고 전략적 방향(오리엔테이션)

우선 영역 및 대 전략 라인(Grand strategic lines) 정의; 7 또는 14단계 결과에 대한 요약

B. 현재 및 계획된 활동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각 이행 원칙에 관하여 정부에 의해 취해진 현재 그리고 계획된 활동에 관한 논의 (원칙 1-10, 25-28, 30 그리고 31)

이행원칙 1 각 관련 이행 원칙에 관하여 현존하는 그리고 미래의 정부 서약의 구체화

i. 이행원칙 문서

관련 언어를 이용한 각 원칙 문서를 서술하라.

ii. 현재 활동

이행 원칙과 관련한 현재 활동 서술; 6 또는 13단계 평가 요약 서술

iii. 활동 계획

이행원칙과 관련된 계획된 활동의 서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행원칙의 모든 부분에 동일한 구조로 적용한다. (이행원칙 1-10, 25-28, 30 그리고 31, 부록 III 또한 참고)

C. 행동 포인트(Action Point) 및 이행의 양상의 모음

모든 계획된 행동 포인트 모음; 1) 구체적인 목적, 2) 취해질 활동, 3) 관련 기업의 명확한 책임 분배, 4) 행동이행을 위한 기간, 5) 행동의 이행과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수행지표 (부록 II 참조)

IV.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메커니즘의 구체화; 1) 다음 NAP 업데이트 기한, 2) 모니터링 양상 (12단계 참조), 3) 정부 내 관할 부서

부록 II :
NAP 구조 모델 III C.
(행동 포인트 및 이행 양상의 모음)

이 부록은 NAP 모델 목차의 제 4장의 C에 담긴 행동 포인트와 그들의 이행 양상을 아우르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것은 다른 사안에 관한 NAP 개발 모범

사례를 반영하였고,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핸드북의 관련 제안과 일맥상통한다.

이행 원칙 1				
목적	활동	관련 정부 기관	완료 시기	수행지표
이행 원칙 2				
목적	활동	관련 정부 기관	완료 시기	수행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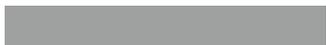
(국가를 대상으로 한 모든 이행원칙은 동일한 구조를 따라야 한다. (이행원칙 1-10, 25-28, 30 그리고 31.)

부록 III : NAP에 포함되도록 고려되는 잠정적인 이슈 목록

이 부록은 정부가 국가에 관한 각 이행원칙에 있어 그들의 대응을 고려하는 잠정적인 조치 목록을 나열한다. 이 목록은 이행원칙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URE 1 참조)

FIGURE 1 : 국가와 기업에 관한 이행원칙과 이행원칙의 도전과제 개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원칙		
제1축 : 국가의 보호의무	제2축 : 기업의 존중 책임	제3축 : 구제책에 대한 접근
<p>기본 원칙 (이행원칙 1-2)</p> <p>운영 원칙</p> <p>일반적인 규제 그리고 정책 기능 (이행원칙 3)</p> <p>국가-기업 관계 (이행원칙 4-6)</p> <p>분쟁 지역(Conflict- affected areas) (이행원칙 7)</p> <p>정책 일관성 (이행원칙 8-10)</p>	<p>기본 원칙 (이행원칙 11-15)</p> <p>운영 원칙</p> <p>정책적 서약 (이행원칙 16)</p> <p>인권 실사 (이행원칙 17-21)</p> <p>개선 (이행원칙 22)</p> <p>사업 환경에 대한 사안 (이행원칙 23-24)</p>	<p>기본 원칙 (이행원칙 25)</p> <p>운영 원칙</p> <p>국가기반 사법절차 (이행원칙 26)</p> <p>국가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 (이행원칙 27)</p> <p>비국가 기반의 고충처리 절차(이행원칙 28)</p> <p>비국가 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이행원칙 29)</p> <p>다중 이해관계자 활동 (이행원칙 30)</p> <p>효과성 기준 (이행원칙 31)</p>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침

* 지침 30 과 31은 정부(국가)와 기업 둘 다 대상으로 함.

아래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행원칙과 관련하여, UN 이행원칙 문서는 정부가 고려해야 할 일련의 조치를 상기시킨다.

제 1 축

A. 기본 원칙

이행 원칙 1:

국가는 자신의 영토나 관할권내에서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 입법, 규제 그리고 재판을 통해 그런 침해를 방지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고,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행원칙 1은 국가 보호의무의 핵심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가가 자신의 영토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재확인한다. 이행원칙 1은 그러므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 법적 의무가 이행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나머지 원칙들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행원칙 1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국가가 고려해야 할 조치들은 해당국가가 서명한 국제 그리고 지역 인권 문서와 연결된다.

잠재적 조치:

국제 및 지역 국제인권문서 비준, 서명

국가의 보호의무는 비준한 조약에 의해 정의된 의무를 참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의정서를, 서명 및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 서명 및 비준한다.
-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인권문서(협약)를 서명 및 비준한다.
- 관련 ILO 협약, 특히 ILO이사회에 의해 확인된(의한) 8개의 핵심협약을 서명, 비준한다.
-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미주

인권협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의정서를 서명, 비준한다.

연성법 문서(instruments)를 서명 및 준수한다.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및 지역 인권문서(조약)들은 연성법에 의해 보완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ILO 삼자선언을 채택하고 노동에 있어서 권리와 기본원칙에 대한 선언에 대한 준수 의지를 표명한다.
-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및 아세안 인권선언과 같은 관련 지역 연성법 문서를 채택한다.
-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비 OECD 회원국 또한 해당함)

모든 개인의 평등 및 비차별적 보호를 보장한다.

이행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은 성, 나이, 민족, 성적 지향, 경제적 상황, 또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평등 및 비차별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취약집단 및 소외된 집단의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 및 지역인권문서 모두를 서명, 비준한다.
- 특히 취약 집단의 보호를 보장하는 추가적이고 잘 맞추어진 조치들을 취한다. (각 이행원칙의 상세한 조치를 참조)
- 평등 및 비차별 보장 조치에 관하여 다양한 UN 위원회와 지역기구에 보고한다.

이행원칙 2:

국가는 자신의 영토 및 관할권에 주재하는 모든 기업이 자신의 사업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행원칙은 역외적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국가의 기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행원칙 2의 주석은, 일부 인권조약기구들이 기업과 인권에 관련한 역외적 의무에 대해서 소개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국제인권법 하에서는 국가에게 자신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 주재하는 기업의 역외적 활동을 규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승인된 사법적 기반

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역외적 활동 규제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잠재적 조치:

역외적 영향을 가지는 조치 이행

모국 정부들(home governments)이 기업의 자국 외 영향을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역외적 의미를 가지는 국내 조치 또는 역외적 직접 입법과 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NAP에 명시된 조치들이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에 주재하는 기업의 역외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예방, 해결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주재국이 가진 영향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⁷(구체적인 조치들은 부록에서 논의된 각 이행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제 2축에 기반을 두어 기업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제 2축 하에서 기업의 책임이행 노력과 국가 정책의 일관성 둘 다에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이 어디서 운영되는지에 상관없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들이 UN이행원칙의 제 2축 및 UN인권고등판무관이 개발한 2011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해석 지침에 서술된 바와 같은 인권 실사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시적으로 서술한다.
- 공급업체 그리고 기업의 기타 관계의 인권 실사와 관련한 기대를 명시한다.
-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지지 또는 규제하는 모든 정부 조치에서, 그리고 NAP에서, 기업에 대한 기대 단계가 일관된 방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 다국적기업 OECDE 가이드라인을 준수, 지지한다. (비 OECD 회원 또한 해당함.)

국가의 기대를 기업이 인식하도록 한다.

기업은 자신들에 대한 정부의 기대를 알아야 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의 인권 존중에 관한 국가의 기대를 기업과 함께 명확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교환하여 소통한다.
- UN이행원칙, 기업과 인권에 관련된 NAP 그리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의 기대에 관한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캠페인을 개발한다. 이 캠페인은 고용주협회, 산업부문별 협회, 또는 UN 글로벌 콤팩트 네트워크에 의해 조직될 수 있다.
- 정부의 기대를 전달하기 위해 기업 경영자(리더)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한다.
- NAP 착수를 이용하여 정부의 기대를 알린다.

B. 운영 원칙

국가의 일반적인 규제 및 정책 기능

이행 원칙 3:

보호 의무를 충족함에 있어서, 국가는,

- (a)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런 효과를 갖는 법을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그러한 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모든 괴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b) 회사법과 같이 기업의 설립과 일상적 운영을 규율하는 다른 법과 정책이 기업의 인권존중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 (c) 사업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에 관해 기업에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해야한다.
- (d)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떻게 인권영향에 대처했는지에 관해 소통하도록 권장해야하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요구해야 한다.

⁷ 참조: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hr.pub.12.2_en.pdf.

이행원칙 3은 국가가 자신들의 일반적인 규제 및 정책기능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보호의무 충족해야 한다는 보충문서의 넓은 범위를 서술한다. 이것은 기업을 위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적 요구에 기반을 둔 조치를 포함한다.

잠재적 조치 이행원칙 3a/3b:

현행법 집행 개선

많은 맥락에서,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실패는 현행법의 불충분한 시행 때문이다.:

- 관련 법적 틀의 집행을 맡는 행정지부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 관련법의 이행 보장을 맡은 정부기관과 연계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개발협력을 통하여 현행법 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들을 지원한다.
- 사법적 구제책에 대한 접근의 개선 (이행원칙 25-26 참조)
- 다자 또는 양자 투자조약이 정부의 인권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행원칙 9 참조)
- 법 집행의 괴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법적 틀의 괴리를 해소한다.

기업과 인권 사안들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광범위한 일련의 법과 연결되어있다:

- 모든 보호 간극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인권 양립가능성과 함께 현행 기업 관련 입법들에 관한 심도 깊은 조사를 시행한다.
- ILO 협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노동법과 규제를 제정한다.
- 성적 그리고 재생산 건강권, 가족계획, 젠더 기반 폭력과 같은 남녀에 관한 차별적 영향에 관한 사안을 고려하여 노동자 건강에 관한 권리들이 충분히 국내 입법에 의해서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새로운 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입법 내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다. 이것은 설립 조항

에서 기업이 인권 존중에 대한 서약을 선언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한다.

- 기업법에 인권을 고려한 기업 이사의 법적 주의의무를 도입한다.
- 기업에게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약속 및 '합법적인'이거나 '공공질서에 대한 존중'에 따라 기업이 행동할 것을 상장요건으로 도입한다.
- 효과적인 뇌물방지 그리고 부정부패방지 입법을 제정한다.
- 사전동의원칙(FPIC)을 포함한 효과적인 공동체 참여에 관한 법적 요건을 도입한다.
- 공기, 토양 또는 수질의 유독 및 유해 또는 악화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예방하고 다루는 입법을 도입한다.
- 재산에 관한 토지관습법(customary land rights in property) 및 토지관리법을 인정한다.
- 조달법에 인권 실시 요건을 도입한다. (이행원칙 6 참조.)
- 군수품 및 감시기술과 같은 고위험 물품 수출을 규제 및 통제하는 법조항에 대한 인권요건을 도입한다.
- 국내 법 틀이 아동에 관한 권리 협약 위원회의 일련평 제 16호에 명시된 것과 같은 아동권을 기업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보장한다.⁸
- 모회사가 그들이 통제하는 기타 기업 회원에 의해 실행된 행동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
- 기업과 인권에 관련된 모든 법과 전체로서의 법체계가 평등과 비차별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도록 보장한다.

새로운 법이 기업의 인권 존중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기업의 인권존중을 가능하도록 그리고 조성하도록 하는 법체계 조항은 지속적인 노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 기업과 인권 사안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을 평가하고, 우려사안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업무를 국가인권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게 부여한다.

8. 참조 : CRC/C/GC/16

이행원칙 3c를 위한 잠재적 조치

제 2축의 이행에 관한 지침 자료와 도구의 개발

지침 자료와 도구는 기업이 구체적인 맥락 및 사안과 관련한 국가의 기대를 이해하는 것을 도우며 기업 존중 책임 이행에 관한 실용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필요성이 확인된 특정 산업 부문의 실용적인 지침 문서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또는 자원 채굴 및 무역)
- 필요성이 확인된 특정 사안의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재정착, 공동체 계약 그리고 동의, 분쟁지역에서의 노동, 공급업체, 또는 건강권 존중에서의 기업 역할에 관한 사안)
- 인권 실사 절차의 구체적인 단계에 관한 실용적인 지침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인권영향평가, 완화 조치 정의 및 이행, 또는 보고)
- 아동⁹, 여성, 선주민¹⁰, 소수민족 그리고 장애인과 같이 기업 관련 인권 침해에 특히 취약한 인구 집단 보호에 관한 실용적인 지침을 개발한다.
- 중·소기업(SMEs)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지침을 개발한다.
- 인권실사 이행에 관한 온라인 도구를 개발한다.
- 현존하는 문서를 국내 맥락과 관련한 언어로 번역한다.
- 지침 자료와 도구의 새로운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다른 정부와 협력한다.

기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침 자료와 도구는 기업의 운영 상황에 따라 기업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고용주 협회, 산업 부문별 기업 협회, 또는 UN글로벌 콤팩트 네트워크와 같은 기업 포럼과 협력하여 기업을 위한 인권실사 훈련을 개발한다.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사안에 관하여 기업에게 조언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원을 제공한다.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 주재국

(host state)이 조언할 수 있도록 대사관원을 훈련하고 업무를 부과한다.

- 무역 업무를 포함한 모든 수출 증진 활동에 인권 사안에 관한 조언이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 기업과 인권 사안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할 수 있는 포컬 포인트(focal point)를 만든다.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에 그리고 내부에 공유된 교환 및 교환을 촉진한다.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해관계자 집단 내의 동료로부터 배우는 것은 기업과 인권 실행의 책임 보급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특정 고 위험 부문 또는 사안과 같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교환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을 지지하고 잠재적으로 이끌 것.
- 시민사회 조직 네트워크의 전문지식과 영향력을 모으기 위해 그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 기업 간에 교환 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UN글로벌 콤팩트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콤팩트-ILO 아동노동 플랫폼과 같은 기업 주도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중이해관계자의 이니셔티브 지지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는 인권사안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기업 행동을 안내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가 이행원칙을 언급하는 것과 기업으로 하여금 제 2 축에 따른 인권 실사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보장한다.
- 문제가 되는 분야나 혹은 기존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의 개발
-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기업 이행의 확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 기반을 둔 고충처리 절차의 개발을 지원 (이행원칙 30 참조)

9. 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No. 16(2013) 참조

10. 2013년 유엔 총회에 제출된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워킹그룹 보고서'(A/68/279) 참조

이행원칙 3d를 위한 잠재적 조치

기업의 인권 실사에 대한 보고 장려

국가는 인권실사와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에 관하여 국가의 기대를 표명함으로써 기업과 인권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의 정의의 일부로서 인권에 대한 보고에 관한 그들의 기대의 명확한 표명 (이행원칙 2 참조)
- 기업들이 인권을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들의 효과성과 더불어, 규명된 인권 영향 및 영향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이 기대된다는 표명
- GRI와 같은 확립된 보고 표준을 참조

법적 구속력 있는 비 재정적 보고 요건 도입

비 재정적 이슈에 관한 법적인 보고 요건들은 투명성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제공하며, 기업들이 인권 실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니셔티브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인권 실사 과정 및 해당 기업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및 관할권에서의 결과에 대한 비재무적 보고 요건 수립
- 현지 국가 및 다국적 기업과의 계약에서의 투명성 요건 도입
- 증권거래소 상장조건에 인권 문제에 대한 보고 요건 도입
-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를 통한 정보의 확인 보장 및 부정확 및 불완전한 정보 제공시의 처벌

정부와의 지불관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기업이 정부에 돈을 지불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투명성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프로젝트 단계에서 기업과의 금전 거래 금액에 대한 공개
- 프로젝트 단계에서의 기업의 금전 출납에 대한 공개 요구
- EITI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참여 및 지원
- 보고서의 독립된 감사 배정을 통한 정보의 확인 및 부정확 및 불완전한 정보의 제공시 제재 부과

국가와 기업의 연결

이행원칙 4: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수출신용기관과 공적 투자보험, 보증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인권실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잠재적 조치:

국가 소유 및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에 의한 이행원칙 이행 확보

국가 소유 및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역시 이행원칙의 제 2 축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을 따라야 한다. 게다가, 기업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경우나, 기업의 활동이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는 국가의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 소유 및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이 다른 사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동일하게 부응하도록 보장(이행원칙 2 참조)
- 국가 소유 및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이 효과적인 인권 실사를 이행하도록 보장
- NGC나 책임투자원칙과 같은 관련 다중 이해관계자 및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 장려
- 국가 소유 및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에 의한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고 및 절차 감독 수립.
- 국가 소유 및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의 감독을 책임지는 행정부처에 대한 적절한 권한 및 자원 배분

수출 신용기관의 활동에 있어 (응자에 관한) 인권 조건 삽입

수출신용기관은 모국이 기업에 의한 인권 존중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수출신용기관이 그 절차에 걸쳐서 이행원칙을 어

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인권 서약과 행동에 관한 정책 개발

-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험이 규명된 경우, 그 적용 절차의 일부로서 인권 실사를 필요적으로 요구
- 수출 신용을 신청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위험을 가진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 그 완화조치의 이행을 조건화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지원 자제
- 지원 받는 회사 및 프로젝트의 인권 영향 감시를 위한 적절한 자원의 배분
-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수출 보증 및 환경과 사회 실사를 위한 공동접근에 대한 OECD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지지 및 채택

다른 공공 금융기관에 대한 (용자에 있어서) 인권 조건 도입

수출신용기관 외에도, 정부는 기업들에게 연금 기금, 공공 은행 및 금융기관, 투자 보험 기구 및 개발 금융 기관과 같은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모든 (국내 및 다자간) 공공 금융기관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책임 투자에 관한 UN 원칙의 준수 및 환경 및 사회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금융공사 수행기준 (IFC Performance Standards)과 적도 원칙의 표명을 비롯한 인권 용자조건을 포함하는 것.
-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 프로젝트 신청과정에서 인권 실사를 요구
-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인권 영향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자원 분배
- 국제 및 지역 개발 금융 기구에서 인권 고려의 포함을 지원(이행원칙 10 참조).

비 금융적 지원방안에서 인권 조건 도입

정부는 비금융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대사관 또는 전문적인 수출 장려기관에 의한 수출 장려지원 조치의 수여함에 있어 효과적인 인권실사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

- 개발 원조에 대한 민간 기업 파트너의 참여에 대하여 회사의 인권 관련 이력과 제시한 파트너십에 대한 적절한 인권 실사를 조건으로 제시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그런 상황을 다루는 데 협력을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파트너십을 자제

이행원칙 5:

국가는 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계약을 하거나 이런 기업을 위한 입법을 할 때 자신의 국제법상 인권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감독을 해야 한다.

이행원칙 5는 기업들이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경우를 다룬다. 민영화 대상이 되는 영역은 보건, 교육, 처벌 및 망명 체계를 포함한다. 정부가 그런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국가의 인권책임을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국가 고유의 법적 책임을 유발한다.

잠재적 조치: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한 입법을 할 경우 인권 요건 도입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및 민간 부분의 이행 이전에 인권 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
- 인권에 관한 부정적 영향의 위험이 밝혀진 경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인권 규정을 도입
- 정부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실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규정 도입
- 기업 선택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슈로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을 조건에 포함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교육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인권 영향에 대

한 적절한 감독과 모니터링 확보

민간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인권을 준수할 것을 보장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영역 중 하나는 민간 경비 산업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이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개인 경비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들의 운영 전반에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적절한 인권 실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
- 군사 분쟁에 관한 민간 군사 업체 및 경비업체에 관련된 국가의 적절한 법적 의무 및 모범사례에 관한 몽트뢰 지침(Montreux Document)의 회원국으로 가입
- 민간보안업체의 국제행동강령을 위한 협회(ICoCA) 및 민간보안업체의 국제행동강령(ICoC)의 회원국으로 가입
- '민간보안업체의 국제행동강령(ICoC) 및 협회(ICoCA) 회원이 아닌 민간 경비 및 군사 업체(PSMC)와의 계약을 배제하는 입법 추진

이행원칙 6:

국가는 자신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기업의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

이행원칙 6은 국가에게 그들이 상업적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을 존중하도록 증진시킬 기회를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활용하기를 요청한다.

잠재적 조치

공공 조달에 있어서 인권 조건의 도입

정부가 기업과의 상업적 거래를 하는 주단 방식은 바로 공공조달을 통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대상 제품의 공급망 등에서 부정적인 인권 영향 위험성이 밝혀진 경우, 입찰자에 대해서 인권 실사를 요구
- 입찰자들에게 인권 실사의 측면에서 무엇이 기대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안내를 제공

- 성공적인 계약자를 선택하고 인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높은 위험을 가진 입찰자를 배제할 때 인권을 고려
- 모든 계약자들에 대해 인권 요건과 인권 실사 조치를 포함
- 모든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인권 영향 감시를 보장

지방 정부 수준에서 공공 조달 기관에 있어서 인권 조건의 도입을 확산

주(도) 및 지방 단위의 기관들은 전반적인 조달의 많은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가능한 한 경우, 지방 단위의 조달 기관에게 중앙 정부에서 이행되는 수준의 인권 기준을 이행할 것을 요구
- 높은 인권 리스크를 가진 조달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통합
- 지방 단위의 관련 기관과 함께 공공조달에 인권을 접목하는 것에 대한 역량 형성 이행

분쟁지역 내 기업의 인권존중 지원

이행원칙 7: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은 분쟁지역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국가는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맥락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인권 침해에 개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a) 기업이 자신의 활동과 사업관계에서 인권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 기업과 교류하는 것.

(b) 성차별에 기초한 폭력과 성적 폭력 모두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고조된 인권침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

(c) 심각한 인권침해에 개입되어 있으면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협력하지 않는 기

업에 대해서 공적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d) 심각한 인권침해에 기업이 개입될 위험에 대처함에 있어서 국가의 현재 정책, 입법, 규제, 그리고 집행수단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

이행원칙 7은 분쟁 지역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 존중에 관한 어려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행원칙은 국가로 하여금 이 고조된 부정적 인권 영향 위험을 다루기 위해 향상되고 특별한 맥락의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쟁 지역과 관련한 국가의 보호 의무의 이행은 존 러기의 2011년 별도 보고서를 따른다.¹¹

잠재적 조치:

기업에 대한 분쟁에 특화된 안내 및 조언 제공

기업들은 분쟁지역에서 어떻게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조언과 지침을 받기 원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분쟁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인권 실사를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예컨대 대사관 및 국가인권기구를 통하여 안내와 조언을 제공(이행원칙 3c 참조)
- 각 분쟁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조기 경고 프로그램 개발
- 필요한 경우 기업들이 인권 실사의 일부로서 분쟁 민감도 평가를 할 수 있게 지원
- 성 및 성에 기반을 둔 폭행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지침 개발 및 이 문제에 대해 기업에게 조언
- 분쟁에 의해 영향 받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관한 OECD 실사 지침서의 이행 증진

분쟁으로 인해 영향 받는 지역 관련 이슈를 다루는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지지

분쟁으로 인해 영향 받는 지역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

려해야 한다:

- '안보 및 인권에 대한 자발적 원칙'과 '민간경비 기업에 대한 행위규범'의 요건을 준수 및 이행
- '분쟁 광물 배제 이니셔티브' 및 '분쟁 없는 제련소 프로그램' 등 민간 분야가 이끄는 이니셔티브 지지
- 분쟁 영향지역에서부터 생산되는 자원에 대한 책임 있는 채굴과 거래에 관한 인증제도 수립 및 지지에 참여

분쟁지역 관련 법률 제정

분쟁 지역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기업의 연루 위험이 고조되면, 정부는 특정한 입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분쟁지역에서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다루는 범위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평가 및 보호 간극에 대처하기 위한 규명 및 행동
- 분쟁 영향지역에서의 상품에 대한 보고 요건 도입
- 특정 고위험 국가내 활동에 대한 통보 및 보고 의무 도입
- 기업이 소재 및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이나 관할권 안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체계 마련
- 로마규정(Rome Statute) 대한 비준 및 승인 및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
-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 연루의 방지, 최소화, 보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자간 노력 참여

정책적 일관성의 확보

이행원칙 8:

국가는 기업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부처와 기관, 그리고 여타 국가 기반의 제도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때 국가의 인권의무를 반드시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정보, 훈련 및 지원의 제공이 포함된다.

이행원칙 8은 국가에 대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일관된 접근법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국가

11. 참조: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TransCorporations/A.HRC.17.32.pdf>

가 국제적인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직적 정책 일관성을 포함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 단위 수준에서 모든 관련 부서에 걸쳐서 수평적인 정책적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행동계획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 도구이다.

잠재적 조치:

이행원칙과 NAP에 대하여 내부적 훈련과 역량 형성 실시

이행원칙과 NAP과 관련하여 훈련 및 역량 형성을 실시하는 것은 모든 정부 기구 전체에 걸쳐 정책의 수평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모든 정부 관료를 위한 이행원칙과 NAP에 대한 안내서 및 교재 개발
- 해외 및 수도에서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의무적인 교육 세션 진행
- 국가인권 기구 및 기타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교육 세션과 역량 형성 노력을 실행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 배분

정책 문서의 일관성 확보

기업의 개발 계획, CSR 전략, 국가 인권 행동 계획과 같이 책임 있는 기업 이행에 관한 정책 문서들은 전반적인 일관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각각의 문서에서 다양한 전략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다른 전략들이 서로 참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힘
- 국가 개발 계획, CSR 전략 및 인권 전반에 관한 행동계획이 기업과 인권을 다루도록 하며, 그것이 NAP 전반이나 별도의 NAP에 포함되도록 함
- 모든 다른 정책 문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특히 고 위험 산업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개발

정부 조치의 일관성 확보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 위하여, 모든 정부활동은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활동이 기대되는지에 대하여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 인권을 존중할 책임과 특히 인권 실사 개념이 기업과 인권 이슈 관련하여 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공통분모로 활용되는 것을 확실히 함
- 정부가 기업들이 무엇을 이행하길 원하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이해를 모든 조치의 기초로서 활용

이행원칙 9:

국가는 예컨대 투자조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다른 국가나 기업과 함께 기업 관련 정책목표를 추구할 때 국가의 인권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책상의 운신 여지를 유지해야 한다.

이행원칙 9는 국가가 다른 국가 및 기업들과 함께 이행하는 경제 협약을 다루고 있다. 국가는 정책과 규제를 통하여 그런 협약 조건들 하에서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잠재적 조치:

양자 및 다자간 투자협약이 인권의 존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국제 투자협약들은 모국들이 그 인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양자 및 다자간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행.
- 양자 및 다자간 투자협약에 있어 인권 규정을 삽입.
- 양자 및 다자간 투자협약의 안정화 조항 (stabilization clause)이 기업의 인권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도록 보장.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원.
- 인권과 관련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처리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을 감시.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기업의 인권 존중 증진

무역 협정은 두 국가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고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
- 무역 파트너가 국제 인권 도구나 국제노동기구 기초 협약들을 비준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무역 협정에서 인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 무역 협정 내에 다른 계약 당사자가 인권을 위반한 경우 협약의 규정에서 면책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진행 중인 무역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을 감시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규명된 경우 그 영향에 대응할 조치를 취한다.

현지 국가와 다국적 기업 사이의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

투자 계약은 현지 국가로 하여금 다국적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투자 계약 체결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정부-기업 간 투자계약에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다.
- 기업들이 그들이 영업하는 영역에서 현지 국가의 인권 의무 이행을 제한하는 투자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존 러기 UN 특별 대표에 의해 2011년에 개발된 UN 책임 투자 원칙의 권고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행하도록 한다.¹²

이행원칙 10:

국가는 기업 관련 쟁점을 다루는 다자간 기구의 회원으로서 활동할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국가는 다자간 기구가 인권보호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회원국의 능력을 제약하지도 않고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b) 국가는 다자간 기구들이 각각의 의무와 권한 내에서 기업의 인권존중을 증진하도록 장려하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다자간 기구]가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의무를 충족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술적 지원, 역량 형성, 그리고 인식 제고를 통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 (c) 국가는 기업과 인권 도전을 다룸에 있어 공유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행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이행원칙 10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행원칙 10은 국가들이 다국적 기구의 회원으로서 국가의 역량 안에서 일관된 이해와 정책적 대응을 증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잠재적 조치:

다국적 기구에서 기업과 인권 의제의 진전

이행원칙의 이행은 다국적 기구들에 의한 활용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것들 중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UN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uncil)의 위임된 사명과 활동을 통해 이행원칙의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
- UN 기구 내에서 아동, 여성, 원주민, 소수 민족 및 장애인 등, 기업 관련 인권 침해에 특히 취약한 집단을 위한 보호 강화에 대한 절차 지원
-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및 양식과 권고사항을 지지하고, 비 OECD 회원국들에 의한 더 넓은 준수를 추진.
- IFC와 지역 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들 내에서 인권 기준의 포함을 지지
- 이행원칙의 이행과 함께 ILO 참여 강화
- WTO와 기타 ILO 및 WIPO 같은 다른 국제기구들 사이에서 WTO 일관성위임(WTO Coherence Mandate) 프레임워크 내에서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한 협력을 지지.

12. 참조: A/HRC/17/31/Add.3, 2011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Post-2015 개발 의제 전반에 대한 국제 정책 절차에 있어서 기업 과 인권 이슈를 장려.
- 국제 금융 기구들 사이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도 록 지원하고, 국제 금융기구들 내의 비사법적 고 충처리절차를 수립하는 등, 국제 금융기구가 지원 하는 프로젝트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 받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원.(이행원칙 4, 26, 27 참조)
- WISS(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프로세스 또는 IGF(the Internet Governance Forum)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통신 기술과 관련된 UN 플랫폼을 통하여 기업과 인권 이슈의 포함을 증진
- 모국 및 현지 국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입법에 대하여 공평한 경쟁터를 조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기구의 플랫폼을 활용
- NAP의 개발과 이행 과정에 대한 동료 평가(peer review)에 참여

지역 단체에서 기업과 인권 의제 진전

지역 단체들은 이행원칙의 이행 증진에 있어서 효과적인 촉매제로서 기능해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아프리카연합, 아세안, EU, 유럽 회의, 그리고 미국의 단체에서 인권 이행에 대한 지역적 전략의 개발을 요청하고 지지
- 지역 단체를 회원국의 NAP의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활용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와 UN 인권 조약 감시 기구에 대한 보고서에 기업과 인권 이슈를 포함

UN 인권기구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절차는 국가들의 인권의무 이행에 관한 핵심적인 책임 절차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정부의 활동과 직면 문제에 대해서 UN 인권조약 감시기구와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보고.
- 기업과 인권 이슈를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
-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하여 다른 국가들에 대한 권고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하여 모국 및 현지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교류 및 대화를 증진

- UN 인권 조약 감시기구,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 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절차로부터의 권 고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제3축: 구제책에의 접근

A. 기본 원칙

이행원칙 25:

기업 관련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의무의 일부로써 국가는 자신의 영토나 관할 권 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영향 받은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행원칙 25는 국가의 인권 보호의무의 부분으로서 효과적인 구제책에의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법적 의무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 보상 조치는 사과, 원상복구, 복원, 금전 및 비금전적 보상, 그리고 징벌적 제재, 침해반복 금지 가처분 및 보장을 통한 피해 방지 등을 포함한다.

잠재적 조치:

구제책에의 접근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조화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함

구제책에 대한 접근은 사법적 및 비사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비국가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행원칙 26-31 참조) 국가는 활용 가능한 조치들의 조합이 효과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기업에 의한 부정적인 인권 영향 국내 및 역외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에 대한 접근 범위에 대한 평가 및 간

극의 규명

국내 및 국제적 보상절차에 대한 접근성 증진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런 처리절차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와 이해를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아동, 여성, 원주민, 소수 민족, 그리고 장애인들과 같이, 기업 관련 인권침해에 특히 취약한 집단의 대리인들이 보상 처리절차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절차적 또는 실체적 장벽을 축소. (이행원칙 26, 27, 28, 30 참조)
- 관련 절차들이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고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 등의 조치를 통해서 사법적 및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들이 성적 학대 및 폭력의 여성 및 남성 피해자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장.
- 사법적 및 비사법적 처리절차를 통하여 다국적 보상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이행원칙 26, 27 참조)
-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기구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의 피해자들이 접근 가능한 중재 절차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대한 지식의 생산 및 보급 증진

국가는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보장하고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보상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에 기업에 의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규명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
- 기업이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아에게 구별되거나 불균형적인 또는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을 기반으로 분류된 자료를 지원해야 한다.

인권 옹호자의 보호

구제책에 대한 접근은 인권 보유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압제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UN 인권옹호자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¹³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고 이행하며, 인권 옹호자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의 임무수행을 지원
- 해당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기업관련 인권 침해에 다루는 인권 옹호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입법 추진
- 보호가 필요한 인권 옹호자를 국내 및 역외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
- 대사관을 통하여 인권 옹호자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거나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 지역을 방문하거나, 정기적이고 공개적인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인권 옹호자와 협력
- 정치적 및 외교적인 교류에서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지원 표명
- 기업들이 인권 옹호자를 지원하고 그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조치를 삼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들과 협력
- 필요한 경우, 위협받는 개인에 대해 정치적 망명 제공

B. 운영원칙

국가기반의 사법절차

이행원칙 26:

국가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에 대처할 때 구제책에의 접근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실제적 장애물 및 기타 관련 있는 장애물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국내 사법절차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행원칙 26은 적법절차 원칙에 기초한 공정하고 필수적인 사법적 조치가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13. 참조: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fenders/Declaration/declaration.pdf>

는 합법적인 사건들이 모국이나 현지 국가의 법정에서 다루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사법적 구제책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및 절차적 장벽은 물론 법적 장벽도 줄여나갈 것이 요청된다.

잠재적 조치:

독립적인 사법체계 강화

사법 체계의 독립성은 구제책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 핵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 헌법 및 법체제의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존중
- 사법부가 어떠한 제제나 부정적인 영향과 압력 없이, 결정을 위해 사법부에 제출된 문제에 대해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
- 정치적 간섭을 제한하기 위한 상급 법조관리의 적법한 임명 절차 도입
-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 제공
- 타국의 사법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

법적 장벽 축소

국내 사법체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침해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상관없이, 형법체계가 침해자의 국적이나 모국의 기업의 거주지에 기초하여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행원칙 2와 3a/b참조)
- 민사책임 체계가 거주지 및 모국에서의 기업의 상황 여부에 근거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
- 현지 국가 법원이 기업과 인권 관련하여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
- 합법적인 사례의 청구인이 현지 국가에서 재판을 거부당하는 경우, 모국의 법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국가 노동 중재위원회에 기업과 인권 영향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정부 및 다국적 투자 금융 기구에 의해 지원 받는 프로젝트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구제책에의 효과적인 접근 확보
- 기업 및 그 직원이 인권 침해에 연루된 죄책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 대량 학살, 전쟁 범죄, 기타 인권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 폐지
- 모(母)기업이 그 관리 하에 있는 계열사가 저지른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
- 아동, 여성, 원주민, 소수 민족, 장애인 등 기업 관련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의 대표들을 포함한 모든 집단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 보장

법적인 구제에 대한 실제적 및 절차적 장벽 축소

법적인 장벽 외에도 사법적 보상을 받을 권리는 실제적 및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방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검사가 국내 및 역외에서 발생한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연루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마련
- 국내 및 역외의 기업 인권 침해에 관하여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및 법관의 양성
- 법원이 피해자들이 불편의법정지(forum non conveniens)를 이유로 각하당할 수 있는 경우, 그 전에 활용가능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청구인에게 소 제기된 사건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청구인이 패소하는 경우 소송관련 비용을 커버해주는 시스템(no cost ruling)을 채택하는 것도 포함됨.
- 법과 정책을 통해서, 청구인이 재판 관련 어떤 보복적인 조치도 당하지 않도록 보장
- 집단 소송, 다자간 소송 및 기타 재판에 있어 다른 집단적인 소송과 같은, 종합 소송이나 대표 소송을 위한 선택사항의 도입 및 강화
- 어린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에 대한 맞춤 지원 제공

국가 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

이행원칙 27:

국가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국가 기반의 포괄적 체계의 일부로서 사법절차

와 더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사법적 고충 처리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행원칙 27은 사법적 고충처리 절차를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는 국가기반의 행정적, 입법적 기타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다. 국가는 기업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접근의 간극을 다루기 위하여 현존하는 사법 절차에 대한 권한을 확장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잠재적 조치:

국가기반의 기존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의 효력 강화

많은 국가들이 이미 다양한 수준의 효력을 가진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 및 옴부즈맨 기관이 기업 관련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권한과 재원을 갖추도록 보장.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NCP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가능한 경우 NCP의 권한과 재정적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NCP의 효과성을 증대
- 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맨 기관, 또는 OECD NCP 등이 국내법 하에서 제공하는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를 확고히 함
-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에 따라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혀진 기업들이 보상 조치를 취하고, 행정 벌이나 벌금, 또는 국가 서비스에 대한 제한 등의 적절한 결과를 받도록 보장.(이행원칙 4, 5 참조)
-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에 의해서 모국 및 현지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모국 및 현지 국가의 감독 체계를 향상.
-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가 이행원칙 3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
- 이행원칙 31의 효과성 기준에 기대어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권한을 통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적절하고 독립적인 감독 체계 도입

국가 기반의 새로운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 수립

국가기반의 새로운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의 수립

은 기업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접근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다루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 및 옴부즈맨 기구에 기업관련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불만사항을 접수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적절한 권한과 재원을 확보한 NCP를 수립
- 기업관련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접수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체 기구를 설립
- 국가 소유 및 국가 통제 기업에 의한 부정적 인권 영향에 관련이 있다고 제기된 불만사항을 접수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책임 절차를 수립
-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지원 받는 프로젝트 관련 불만사항을 위한 보상 절차를 수립하고, 국제 금융 공사의 준수관리자 옴부즈맨 체계를 참조할 것을 고려
- 기업과 영향 받은 개인 및 그들의 대리인 사이에 즉각적인 조정을 촉진

비국가 기반의 고충처리 절차

이행원칙 28:

국가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다루는 효과적인 비국가 기반의 고충처리 절차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행원칙 28은 국가에게 효과적인 비국가 기반 고충처리 절차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 단독으로 운영하는 고충처리절차와 기업과 이해관계자, 기업 집단, 또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함께 운영하는 고충처리절차 및 지역 또는 국제적 인권 단체들이 운영하는 고충처리절차도 포함된다.

잠재적 조치:

기업 기반의 고충처리절차의 개발 지원

국가는 기업이 초래하거나 기여한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대한 기업의 보상 및 협력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기반 인권 침해 보상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행원칙 22 참조)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이행원칙 31에 규정된 기준에 부응하는 기업 기반의 효과적인 고충처리절차 수립에 대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지침을 마련.
- 기업 집단들이 고충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
- 기업 기반 고충처리절차에 시민 사회단체들이 포함되도록 지원

지역 및 국제 인권 단체에 대한 접근 지원

기업기반의 고충처리절차 외에도, 국가는 지역 및 국제적 인권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관련 인권 침해 보상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지역 및 국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및 그 단체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
- 지역 및 국제 단체들에 대한 연락 체계 수립을 돕거나 법적 조치에 대한 규정을 지원함으로써, 권리 보유자에 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장애물을 다룸

이행원칙 30:

인권 관련 기준 존중에 입각한 산업, 다중 이해관계자, 그리고 기타 집단의 공조활동은 효과적인 고충처리 절차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행원칙 30은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가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침해 받은 당사자나 그 합법적인 대리인들이 문제가 된 정부의 노력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그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효과적인 고충처리절차의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잠재적 조치: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 의한 고충처리절차 개발 지원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는 비사법적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

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에 따른 효과적인 고충처리절차의 개발을 지원하고, 그 고충처리절차가 이행원칙 3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 이행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서 벌금이나 국가 서비스 접근 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행원칙 31: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은 국가 기반의 것이든 비국가 기반의 것이든,

- 정당해야 한다. 즉 이용자로 의도된 이해관계자 그룹의 신뢰를 얻게 하고 고충처리 절차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접근 가능해야 한다. 즉, 이용자로 의도된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알려지고, 접근에 특별한 장애를 갖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한다.
- 예측 가능해야 한다. 즉, 각 단계별로 지표를 담은 시간표와 더불어 이용가능한 과정과 결과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확실하고 공개된 절차를 제공하고, 이행을 감시하는 수단도 제공한다.
- 형평에 맞아야 한다. 즉,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존중받는 가운데 고충처리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보, 조언, 그리고 전문지식의 출처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 투명해야 한다. 즉, 고충처리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가 계속 제공되도록 하며, 효과성에 대한 확

신을 쌓고 문제된 공익이 있다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절차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 (f) 권리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즉, 결과와 구제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합치되도록 한다.
- (g) 지속적인 학습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즉 절차를 개선하고 장래의 고충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훈을 알아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용한다.
- (h) 현장 차원의 고충처리 절차는 또한 참여와 대화에 기초해야 한다. 즉, 설계와 성과에 관하여 이용자로 의도된 이해관계자 협의하고, 고충에 대한 대처와 그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화에 초점을 둔다.

이행원칙 31은 비사법적 구제절차의 효과성에 관한 핵심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행원칙 31이 알려주 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은 그 기준을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잠재적 조치:

모든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가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가 이행원칙 31에 설명된 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국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들(이행원칙 27, 28, 30 참조)이 이행원칙 31에 따라서 개발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
-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권한을 부여하며 재원을 공급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에 대한 지침

| 인쇄일 | 2015년 12월 15일

| 인쇄일 | 2015년 12월 15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문의전화 | 인권정책과 02)2125-9826

| 편집 디자인 | 이병구

| 인 쇄 | 더블에이 카피센터 종로 02)738-2820

ISBN 978-89-6114-453-7 93320 비매품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에 대한
지침